

회에서 구성해온 언론의 고유한 전통이 무엇이며 사회적 변환과 함께 구축해온 언론 영역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언론 영역의 올바른 설정은 윤리 규제를 위한 제도의 올바른 확립에 기초가 된다. 둘째는 한국 사회의 언론 현상에 수용해온 윤리 규제 제도가 내재하는 현안과 대안의 문제이다. 사회가 보다 열린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 다양한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러한 다원적 모습은 언론의 현상에서 그대로 수렴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융통성 있게 포섭하는 한국적 언론이 되기 위하여 언론상(言論相) 역시 탄력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론 규제 제도가 한국 사회 여건을 배려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제도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올바른 언론관의 각성과 함께 이에 따른 윤리 규제의 새로운 제도적 모습이 필요하다.

셋째는 지식 정보화와 함께 갖추어야 할 언론관의 설정과 이에 따른 윤리적 이상 설정과 규제 장치의 확립 문제이다. 새로운 생태적 인식은 이러한 기존 대중매체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이 창조해 가는 공론장의 기능을 신문, 방송과 함께 여론 형성과 공중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아 언론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문제를 요약하면 한국의 언론관이 형성되어온 전통과 동질성을 외국과 대비시켜 음미하고 새로운 시대에 형성될 미래상을 예측하면서 사회적 목적에 적합한 윤리 규제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II. 영미의 언론 규정과 제도화

한국의 언론관 인식과 정착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많은 영향을 입은 영미의 언론 사상을 개관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언론”으로 번역하여 통념화 되어 사용해오고 있는 개념들을 보면 다양하다. discussion, speech, press, journalism, mass communication, broadcasting, newspaper, media 등이다. 이러한 어휘들은 번역하여 차용하는 과정에 사상이나 철학적 요체의 중요성만 강조한 나머지 거의 “언론”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다양한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검토해 보면 그들대로의 독특한 생태적 조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을 잘 염두에 두고 번역과 한국적 수용을 검토해야 했으나 포괄적인 개념 “언론” 하나로 관념화 시켜 가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근대 언론의 연원은 계몽의 의한 근대화와 함께 교회에 대하여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하고(debate) 출판할 수 있는(press)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배경에서 출발한다.(Levy, 1985). 영국에서 “freedom of speech”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1620년 제임스 1세의 포고문에 서였으며 1644년 외일윈(William Walwyn)은 담론(discourse)의 자유를, 밀턴은 말의 자유(freedom of speaking)를 주장하였다(Levy, 1985) 그러나 이 때까지는 의회가 가지는 언론의 자유 논쟁이었고 1673년 아레오파지티카 이후 개인이 가지는 자유로 논해지기 시작하고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일반적으로 되었다.

영미의 언론 제도화의 고전적 원형으로 삼고 있는 밀턴의 언론 사상은 교회가 출판 검열을 통하여 통제하는 출판의 자유에 대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대중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귀족이 누리는 한 권리였다. 밀턴은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출판의 검열에 저항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간의 자동 조정원리(the self righting principle)를 철학적 전제로 삼고 있다.

영국에서 헌법이 채택될 때 언론(speech)의 자유는 의회 안에서의 언론과 토론의 자유이며

1688년 권리장전으로 이루어졌다.(박권상/고명식 역, 1965)

오늘날 자유주의 실천에 중요한 고전이 되고 있는 유명한 “자유론(on Liberty)”에서 밀이 규정한 언론의 범주는 사상(thought)과 말(speaking) 글쓰기(writing)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이를 배경으로 한 의견(opinion)을 바탕으로 토론(discussion)이 성립된다고 본다. 토론이란 언론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자유란 인간이 이성에 의하여 자연성을 향유하는 freedom(원천적 자유)이 아니라 사회의 틀 속에서 제도적 장치와 규제에 의하여 보장되는 정치적 liberty(제도적 자유)이다. 자유로운 토론의 기반을 자유로운 의견(opinion)의 표현에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언론을 제4부로 보아 대항 권력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법원 판사 포터 스투어트는 정부에 3부를 만드는 것 이외에 이를 감시하는 기구로 제4부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언론을 제 4부로 규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는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press”로 명기하여 언론과 출판의 자유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 근거는 처음 헌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없었던 근거이며 건국 이후 시행 기간에 미국 사회에서 언론(speech)과 신문을 포함한 출판(press)의 규제를 제도화 할 근거의 필요성을 각성한 것이 사실이며 양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서 가장 기본권은 자유 언론(free speech)에서 출발하며 사상의 자유 시장 원리(free marketplace of ideas)의 개념이다(Rogenfeld, 1996). 일차적으로는 언론의 개념을 이차적으로는 “자유”의 개념을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상의 자유와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원천은 사유이며 사유를 벗어나 언어나 쓰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역시 사상의 자유를 벗어나 성립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모두 사상의 자유에서 연원하며 표현에서도 일정한 공변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사유하고 표현하며 말하는 자유는 특정 기관이나 특정 매체가 고유하게 한정적으로 가지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 전제된 누구나 향유하는 자유로 해석한다. 국가에 따라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표현(expression)이나 언론(speech)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보호받거나(protected), 박탈되거나(proscribed), 처벌받거나(punished)하며 인간 삶에 결정적인 것이 된다(Trager & Dickerson, 1999).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언론”으로 번역되어 수용해온 영미의 현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느슨하게 논리를 이해하고 수용해온 경향이 없지 않다. (1) 무엇을 영미의 언론으로 볼 것이며 사상적 철학적 배경을 가지는가? (2) 사회문화적 생태는 언론의 제도적 정착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3) 언론으로 규정해온 영역과 매체의 변환 관계는 어떠한가? (4) 제도화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이러한 영미의 speech, press, expression 뿐 아니라 앞에서 열거한 다양한 개념이 사상을 공변수로 하여 성립되어 우리가 번역하여 일반적으로 쓰는 언론은 speech에서 연원하고 있으며 반드시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만을 지칭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지 대중매체의 표현은 speech와 writing의 변용으로 보아야 한다. 구미에서의 언론 사상의 전통과 언론의 자유는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사회 안에서 가지는 자유인 동시에 이를 연장하여 공동체의 표현 또는 언론 활동으로 신문 방송 등의 위치가 규정된다.